##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제 2 소 회 의

의결(약) 제 2014 - 101호 2014. 8. 19.

사건 번호 2014가맹1019

사 건 명 (주)놀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놀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30 대표이사 김〇〇

## 주 문

1 피심인은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가맹점(영업표지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을 창업하면 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 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놀부보쌈' 및 '놀부 부대찌개 &철판구이(이하 '놀부 부대찌개'라 함)'를 사용하여 보쌈 및 부대찌개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2012.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설립일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	직영점/	상시
(현업 =			2010	2011	2012	순이익	가맹점 수	종업원수
1990.1.3.	127,956	74,473	111,296	108,413	79,415	△9,379	3/243(보쌈) 4/346(찌개)	337

\* 자료출처 : 피심인이 등록한 정보공개서(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 다. 시장구조 및 실태

###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서비업· 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 <丑 2>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맹본부수	1,009	1,520	2,042	2,405	2,678
영업표지수	1,276	1,901	2,550	2,947	3,311
가맹점수	107,354	132,277	148,719	170,926	176,788
직영점수	6,087	7,751	9,477	10,155	11,326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 업종별 가맹본부·가맹점 수 추이

<표 3>

(단위: 개,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외식업	947 (62.9%)	1,309 (64.1%)	1,598 (66.4%)	1,810 (67.5%)
기메워버스	서비스업	338 (22.5%)	440 (21.5%)	489 (20.3%)	513 (19.2%)
가맹본부수	도·소매업	220 (14.6%)	293 (14.3%)	318 (13.2%)	355 (13.3%)
	전 체	1,505 (100%)	2,042 (100%)	2,405 (100%)	2,678 (100%)
	외식업	1,228 (64.6%)	1,661 (65.1%)	1,962 (66.6%)	2,246 (67.8%)
日刊亡人	서비스업	413 (21.7%)	532 (20.9%)	593 (20.1%)	631 (19.1%)
브랜드수	도·소매업	260 (13.7%)	357 (14.0%)	392 (13.3%)	434 (13.1%)
	전 체	1,901 (100%)	2,550 (100%)	2,947 (100%)	3,311 (100%)
	외식업	51,503 (38.9%)	60,268 (40.5%)	68,068 (39.8%)	72,903 (41.3%)
) 가맹점수	서비스업	49,183 (37.1%)	52,208 (35.1%)	62,377 (36.5%)	60,535 (34.2%)
/ 787	도·소매업	31,757 (24.0%)	36,243 (24.4%)	40,481 (23.7%)	43,350 (24.5%)
	전 체	132,443 (100%)	148,719 (100%)	170,926 (100%)	176,788 (100%)
	외식업	2,087 (27.1%)	3,086 (32.6%)	2,984 (29.4%)	3,235 (28.6%)
지어저스	서비스업	2,758 (35.8%)	2,887 (30.5%)	3,036 (29.9%)	3,251 (28.7%)
직영점수	도·소매업	2,850 (37.0%)	3,504 (37.0%)	4,135 (40.7%)	4,840 (42.7%)
	전 체	7,695 (100%)	9,477 (100%)	10,155 (100%)	11,326 (100%)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 2) 가맹사업 운영형태

-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 <표 4>

## 가맹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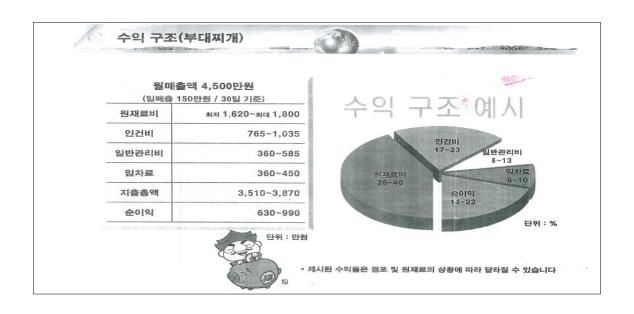
구 분	형 태	예 시
유형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입비, 교육비 등
유형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보증금, 담보제공 등
유형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
유형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상표사용료, 광고분담금,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
유형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 1) 행위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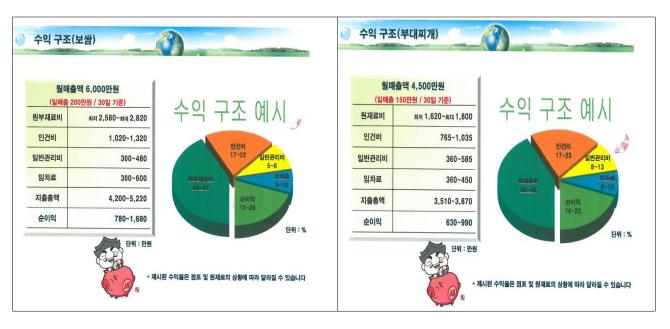
6 피심인은 2011.1월부터 2011.7월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 및 충청지역의 '놀부부 대찌개' 사업설명회를 약 2회 내지 3회 개최하고,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아래 <그림 1>과 같이 "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그림 1> 사업설명회에서 제공된 수익구조 정보내용



또한, 피심인은 2011.6월부터 2011.8월까지 기간 동안 피심인의 영남사업소(604호) 및 부산역 내 회의실(103호)에서 영남권 맞춤형 창업설명회를 총 5회 개최하고,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총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아래 <그림 2>와 같이 "수익구조(보쌈), 일매출 20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6,000만원, 순이익 780~1,680만원", "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1)

<그림 2> <u>창업설명회에서 제공된 수익구조 정보내용</u>



<sup>1)</sup> 피심인의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 진행방식은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브랜드 모두 프리젠테이션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7 피심인은 앞서 기술한 사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사된 일부 가맹점의 3개월 기간 동안 월 평균매출액 및 월 평균순이익을 기준으로 위 <그 림 1> 및 <그림 2>의 월 순이익을 산출하였다.2)

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월 순이익을 산출할 때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sup>3)</sup>와 가맹점사업자가부담해야 하는 세금<sup>4)</sup>을 제외하였다.

- 회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사업(창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놀부보쌈'
  가맹점(50평 기준)의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투자비용은 13,831만원이며, '놀부부대 찌개' 가맹점(30평 기준)의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투자비용은 9,187만원이다.
- 9 한편, 피심인은 앞서 기술한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 2) 관련 법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2010년, 2011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_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sup>2)</sup> 놀부보쌈의 경우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손익계산 관련 자료(인건비, 임차료 등)를 제공받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하였다. 놀부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액이 4,500만원인 가맹점이 없어 월 매출액이 3,000만원~ 5,000만원 사이인 가맹점 10여개[2010년말 수도권 및 충청지역 가맹점(204개, 지역본부관할 제외)의 약 4.9%]를 선정하고, 10여개 가맹점에서 발생한 3개월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순이익을 토대로 수익구조를 산출하였다.

<sup>3)</sup>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득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 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이다.

<sup>4)</sup>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에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와 주민세가 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수입 금액-지출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주민세 = 소득세 × 10%.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③ 생략

- 3) 위법성 판단
  - 가) 위법성 성립요건
- □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단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후단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누락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11 특히,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3. 1. 24.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2012누8764 판결 참조)
- 12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 사실과 다르 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1)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13 피심인이 사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 과정 중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프리젠테 이션 형태로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가맹점 운영시 월매출액 및 월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 (2)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인지 여부

75 첫째, 피심인은 자신의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가맹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월 매출액 수준별 일정 순이익을 추정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일정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맹점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개별 가맹점의 위치 및 제반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쌈과 부대찌개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그 매출이 달라지는 특성5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전체 가맹점 중 극히 일부(약 4.9%)에 불과한 가맹점의 단 3개월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였고, 상권이 전혀 다른 수도권과 영남권의 수익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 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5째, 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장래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이후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을 누락하였다.

<sup>5)</sup> 피심인 직원(최○○ 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놀부보쌈의 경우 겨울보다는 여름 매출이 좋고, 놀부부 대찌개의 경우 여름보다는 겨울 매출이 좋다.

19 통상 순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원재료 등),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회계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6)

20 감가상각비 및 세금을 비용항목으로 계산하여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순이익을 산출할 경우 월 순이익은 각각 약 399~651만원, 452~1,028만원으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순이익(630~990만원, 780~1,680만원)의 약 58.0~65.8% 수준에 불과하다.

## <표 5> 피심인 예상 월 순이익 및 추가비용 포함 월 순이익 비교

(단위: 만원, %)

<b>—</b> ,,	   피심인 예상	추가 비를	용(월)	추가비용 포함	대비율
구분	월 순이익(A)	감가상각비 <sup>1)</sup> (B)	세금 <sup>2)</sup> (C)	월 예상순이익 (D=A-B-C)	(D/A*100)
돌부부대찌개 	630	153	78	399	63.3
	990	153	186	651	65.8
놀부보쌈  780  23    늘부보쌈  1,000  20		231	97	452	58.0
三十里智	1,680	231	421	1,028	61.2

- 1)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취득가액(놀부부대찌개 9,187만원, 놀부보쌈 13,831만원)에 내용연수(60개월)을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함
- 2) A에서 B를 차감한 금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율(24% 또는 35%), 소득세 누진공제(522만원 또는 1,490만원) 및 주민세율(소득세의 10%)을 적용하여 연간 세금을 계산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함
- 21 실제 법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7)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

<sup>6)</sup> 피심인은 자신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감가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하여 영업이익을 산정하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비용 및 세금을 공제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정한 바 있다.

<sup>7)</sup> 가맹본부가 사업설명회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운영시 PC 5대로 6시간 운영하여 60명을 모집할 경우 월 순수익 770만원"이라고 장래의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였고, 순수익을 계산할 때 인테리어비용, PC 및 집기류(책상, 의자) 구입 등 상당한 비용을 누락하였다.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장래 예상수익을 산출하였고, 순수익을 계산할 때 인테리어비용, PC 및 집기류(책상, 의자) 구입 등 상당한 비용을 누락한 것은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 1. 24.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2012누8764 판결 참조)

- 22 또한, 위원회 심결에서도 세전소득을 '순익'으로 광고한 행위를 거짓 또는 과장성이 있는 광고라고 의결하였다. (2012. 10. 19. 의결(약) 제2012-140호, 삼성창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참조)
- 23 한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내용에 "제시된 수익률은 점포 및 원재료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가 기재되었으나,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순이익 산정 시 수익률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의 비용항목을 누락하고, 기존 가맹점의 실질적인 월 평균 수익 등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임의적 방식에 따라 순이익 등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과장된 정보제공에 의한 가맹희망자의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 24 또한,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심인의 '놀부부대찌개' 및 '놀부보쌈' 가맹점을 창업할 경우 누구라도 일정한 매출액과 그에 상응하는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단서를 기재한 행위로 가맹희망자에 대한 과장된 정보제공의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 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여부

26 피심인은 2014. 4. 4.에 위 2.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고 피심인의 위 2.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 2014년 월 일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박 병 형 위 원 김 의 형